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삭제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28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삭제	2
※ 참고자료	
1.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11
2. 타 부처 및 지자체 의견	11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3.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Ⅲ. 검토의견

1.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삭제

가. 개정안 요지

-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서 이를 직접 규정(안 제10조 삭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삭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현행	개정안
<u>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u>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u> <u>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u> <u>배치에 관한 사항</u> <u>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u> <u>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u> <u>보급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u> <u>진흥에 필요한 사항</u> <u>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u> <u>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u> <u>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u> <u>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u> <u>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u> <u>다.</u> <u>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u> <u>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u> <u>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u> <u>야 한다.</u> <u>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u> <u>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u> <u>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u> <u>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0조는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교육 과정 중 언어 능력 향상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에게는 독서 동아리 운영 및 학교 도서관 운영지원, 사서 교사 배치 근거 규정 등을 통해 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이 아닌 동법에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문체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우선,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¹⁾ 현행법 제4장 독서 문화 진흥은 독서 문화

1) 법 제14조는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 법이 일반법임을 밝히고 있음.

활동 기회보장을 비롯하여 지역, 학교, 직장 등 각 생활영역에서의 국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즉 독서를 ‘문화적’ 관점에서 진흥하기 위한 총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제10조의 학교 독서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독서 문화 형성 및 사회 전반의 독서 문화 지원과 통합·연계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삭제할 경우 법률 체계상 교육기관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독서문화진흥법」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11조(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 또한, 개정 대상 조문(제10조)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적극적 정책추진과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점자법」²⁾, 「국어기본법」³⁾ 등 교육부장관의 의무를 다른 부처 소관법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점자법」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어기본법」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한편,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 제10조제1항의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독서문화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09029)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u>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u>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u>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u>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0조의12(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독서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 소관 법률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4)에서 학교의 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또한,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5)에 따라 초·중

4)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①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의무교육, 학생·교직원, 학교제도, 교육비 지원 등의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서,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래와 같이 대구광역시 교육청도 법체계상 「초·중등교육법」보다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개정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심의 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⁶⁾
-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에서의 독서 활동은 전 생애에 걸친 독서 문화 형성 및 사회 전반의 독서 문화 지원과 통합·연계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특정 계층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현행법 제 10조에서 교육부장관을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있고,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에서 학교의 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 2025.4.18. 현재 미상정

- 교육부는 「독서문화진흥법」이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서 기본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법에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학교의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본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시책’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도서관진흥법」⁷⁾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독서교육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법 체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으나,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의 내용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

7)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확보·양성·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5조(독서교육 등) ①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의3으로 신설하고,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법명을 「학교독서문화 및 학교 도서관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1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 전국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문체부 추진 학교 독서 문화 관련 사업)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2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독서토론 행사 기획·운영(160개교)
'23년	2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독서토론 행사 기획·운영(160개교)

참고2

타 부처 및 지자체 의견

○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교육부 (25. 4. 11.)	「독서문화진흥법」이 국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있어서 기본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학교의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교육부 장관이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행 「학교도서관법」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삭제할 필요

○ 지자체 의견

지자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교육청 (25. 4. 4.)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삭제 후, 삭제된 조항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신설 -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독서교육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법 체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못함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의 내용을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5조 3'으로 신설하고, 현행 '학교도서관 진흥법'의 법명을 '학교독서문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